훈련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주식회사 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엠에스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ISO 9000:2000 추진실무과정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ISO 9000:2000 추진실무과정훈련 및 수행을 위한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훈련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과정으로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훈련 과정명	지정 관할노동관서	훈련기간	훈련 정원	훈련일정	1인당 훈련비	훈련교재
ISO 9000:2000 추진실무과정	안양 지방노동관서	2003.11.21 2004.03.20	110	실시계획서 참조	140,000원	총4권 (월차별1권)

- 나. "갑"의 훈련요구에 따른 훈련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조
- 다.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 1. 훈련교재 등 교육자료 송부
 - 2. 학사관리
 - 3. 학습평가리포트 첨삭 지도
- 라. 훈련종료에 따른 훈련결과 분석 평가서 제출
- 마. 고용보험 환급에 관한 사항
 - "갑"이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제2조(계약기간 및 인원)

- 가. 계약기간은 ISO 9000:2000 추진실무과정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간과 최종 결과 분석 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의미한다.
- 나.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
 - 1)제1차 : 2003년11월21일~ 2004년3월20일/인원 : 110명
 -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 은 훈련생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

- 가. 총 계약금액은 일천오백사십 만원(₩ 15,400,000)으로 한다. 본 금액은 연인원 110명에 대해 1인당 140,000원이며, 훈련인원의 변경시 자동 조정된다.
- 나. 매회차별 대금 지급은 개월 별로 훈련개시후 30일 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예시)

1) 1개월차 : 총 계약 금액의 50%3) 3개월차 : 총 계약 금액의 50%

제4조(계약 보증금 면제) "갑"은 "을"의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못한다고 "갑"이 판단할 시 계약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당해 계약금의 10%)

제5조(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 가. "을"은 훈련자료를 매 차수별로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훈련생이 받을 수 있도 록 발송한다.
- 나. "을"은 훈련진행 사항을 "을"의 홈페이지 상에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갑 및 갑 의 훈련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다. "을"은 훈련생이 매 차수별로 학습평가리포트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첨삭 지도하여 훈련생에게 회송한다.

제6조(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훈련결과 평가서 제출) "을"은 훈련 종료시 훈련 전반에 대한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향후 "갑"의 훈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성실의무)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지정받은 내용과 인정·지정 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훈 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 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 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 라.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퇴사, 부정행위로 인한 미수료등)인한 미수료에 대해서 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 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나. 상기 비밀 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10조(해지)

-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 할 수 있다.
- 나.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훈련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훈련진행정도에 따라 정 산하기로 한다.

제11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다

2003년 11월 11일

"감"

"٩"

회사명: (주)아이피에스

훈련기관명:엠에스컨설팅(주)

대표자: 장호승(인) 대표자: 박종 마

별첨 1. 훈련과정별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훈련생 명단(계약체결일 현재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훈련개 시일 현재 확정된 훈련생을 계약상의 훈련생으로 본다)